

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8. 9. 18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8. 9. 18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6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(98. 9. 19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강석준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(자치 12200-1252, 98. 6. 23)에 의거 우리 시는 지역특성상 도시지역으로 1차산업 분야가 감소되어가고 유통관련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

○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의 통·폐합으로 농산유통사업소를 설치하여 도·농간 농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조례제정

나. 주요골자

○ 유사중복기구 통·폐합

· 산업과 + 농촌지도소 → 농산유통사업소로 설치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농촌지도소와 합병되어지는 사업소로서 농산유통사업소보다는 농산지원사업소로 기구 명칭을 수정하는 데 반대의견 없이 전원 찬성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37호
의결년월일	98. 9. 22 (제64회)

제출년월일 : 1998. 9. 21

제 출 자 : 총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부천시에는 농촌지역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존재하고 있으며 농촌 지도소가 산업과와 합병되는 만큼 농산유통사업소라고 하면 농촌지도소의 명칭이 완전히 사라지는 관계로 농산지원사업소로 수정코자 함

2. 주요골자

○ 사업소의 명칭변경 : 농산유통사업소 → 농산지원사업소

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안 제1조(설치)중 부천시 "농산유통사업소"를 "농산지원사업소"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설치) 늘어나는 농축산물 유통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자연학습장을 개설하여 학생 및 시민에게 자연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(이하 "사업소"라 한다)를 둔다.	제1조(설치) 늘어나는 농축산물 유통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자연학습장을 개설하여 학생 및 시민에게 자연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천시농산지원사업소(이하 "사업소"라 한다)를 둔다.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농산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

제1조(설치) 늘어나는 농축산물 유통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자연학습장을 개설하여 학생 및 시민에게 자연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천시농산지원사업소(이하 "사업소"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위치) 사업소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에 둔다.

제3조(업무) 사업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농업 및 축정업무에 관한 사항
2. 농촌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

제4조(소장)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,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